

변경일

2021. 01. 18.

성희롱및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으로서 교수(강사 포함), 조교, 직원(계약직 포함) 및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울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우리 대학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 (고충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 2 인, 직원 2 인, 학생 2 인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수 중 여성이 50% 이상 70% 미만이 되도록 구성한다. 단,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심의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조사, 심의 및 시정 권고
3.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권고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5.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⑤ 위원회는 교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창구’ 와 ‘고충상담원’ (남녀 각 최소 1인)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3.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4.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상담
 5.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
- ⑥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 (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고충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 ① 위원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성희롱 및 성폭력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2. 성희롱 및 성폭력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자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조치 및 징계) ① 위원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 시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위의 제1항에 해당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